

사전안내 등을 통한 서비스의 강화로 납세자의 불만을 제거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구제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과세행정의 공정성과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세심의기관인 위원회의 정비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법조인, 교수, 세무사 등 지방세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로 보장하여 실질적인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행정소송·헌법소원·위헌심판청구 등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시·도와 시·군·구간 긴밀한 업무협조로 과세처분에 대한 정확한 소명자료의 작성과 승소 대책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패소사건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법부의 행정쟁송사건에 대하여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마. 과오납금 환부처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하였거나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납부 또는 납입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감액의 결정 또는 부과 취소 등으로 초과납부된 금액인 과오납금은 즉시 환부하는 것이 당연하며 납세정의나 형평과세 차원에서 타당하다.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는 권리자의 주소지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환부 조치하여야 하며 소액 과오납금의 경우는 납세자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처리하는 등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하고 아울러 과오납금에 대해 정확한 환부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5년)가 경과된 미환부액은 적기에 세입처리를 확행해야 할 것이다.

3. Cyber 시대에 부응한 납세편의시책 개발·보급

가. 지방세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운영